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타임스퀘어 내 새로 조성된 공공문화복지공간 ‘영등포아트스퀘어’에 대한 체계적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광장’ → ‘문화공간’

-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 ‘영등포아트스퀘어’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는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임. 타임스퀘어 내 우리구 공공 시설인 광장과 영등포아트스퀘어를 함께 관리하기 위해 타임스퀘어 ‘광장’을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으로 변경, 광장과 영등포아트스퀘어를 통칭하여 타임스퀘어 광장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영등포아트스퀘어에도 적용되도록 함.
-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임.

규칙으로 정했던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5조), 사용료(안 제9조 및 별표)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13조(시행규칙)를 삭제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시·홍보관, 공연장, 체험관,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문화플랫폼 ‘영등포아트스퀘어’가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같은 소재지에 있는 우리구 공공시설(문화시설)인 타임스퀘어 광장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영등포아트스퀘어’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9 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인 영등포아트스퀘어 조성에 따라 체계적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영등포아트스퀘어를 포함한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타임스퀘어광장’을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으로 용어 정비(안 제1조~ 제12조)

라.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사용료 기준 및 사용허가신청서 정비(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 10. 20. ~ 11. 9.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타임스퀘어광장”을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임스퀘어광장(이하 “광장”)”을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이하 “문화공간”)”으로, “광장 이용”을 “문화공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책임 하에 광장”을 “책임하에 문화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장”을 “문화공간의”로 한다.

1.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타임스퀘어광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일원에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해당 구역 지상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영등포아트스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지하 2층에 공공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된 장소

제3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60일”을 “90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문화공간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문화공간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문화공간 및 구청장이 문화공간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문화공간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받은 경우
4.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타임스퀘어광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장사용허가”를 “문화공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를 “신청서 상의 사용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별표로 정하는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광장”을 각각 “문화공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장 사용”을 “문화공간 사용”으로, “광장이”를 “문화공간이”로 한다.

제12조 중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u>타임 스퀘어광장</u>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임스퀘어광장”이란 영등포 구 영등포동4가 442-6 일원에 광 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에 설치된 부속시설 물을 포함한다. 2. “사용”이란 <u>타임스퀘어광장</u>(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u>타임스퀘어 문화공간</u>----- -----. 제2조(정의) ----- -----. 1.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이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타임스퀘어광장: 서울특별시 <u>영등포구 영중로 15 일원에 광 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해당 구 역 지상에 설치된 부속시설물 을 포함한다.)</u> 나. 영등포아트스퀘어: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지하 2 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으로 조 성된 장소 2. ----- <u>타임스퀘어 문화공간</u> (이하 “문화공간”----- -----

수 구민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로 책
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
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
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운영·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
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
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5일 전까
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구
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
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 문화공간 이
용-----.

3. ----- 책임하에
문화공간-----
-----.

4. ----- 문화공간의 -----

-----.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 문화공간-----
-. -----
-----.

② 위탁 운영 -----
-----.

제4조(사용허가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

----- 90일 -----
-----.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

-----.

1. 사용 목적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 문화공간-----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문화공간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문화공간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문화공간 및 구청장이 문화공간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문화공간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받은 경우

4.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타임스퀘어광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구청장은 광장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허가사항 변경)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사용허가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영등포구 포함)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
문화공간-----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사항 변경) -----
----- 문화공간 사용허가-----

-----.

1. -----
----- 문화공간 -----

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

----- 문화공간 -----

-----.

1. (현행과 같음)

2. 신청서 상의 사용자 -----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생략)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별표로 정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문화공간-----
-----.

④ -----

-----.

1. -----
----- 문화공간-----

2. ----- 문화공간-----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 문화공간 -----

-----.

② 구청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이 손상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9조 관련)

구분	단위	금액(원)	비고
사용료	m ² /시간	10원~20원	
기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② ----- 문화공간 사용-----
문화공간이 -----

 -----.

제12조(준용) 문화공간-----

 -----.

<삭 제>

[별표]

사용료 기준(제9조 관련)

○ 타임스퀘어광장

구분	단위	금액(원)	비고
사용료	m ² /시간	10원	
기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영등포아트스퀘어

구분	스퀘어A (미디어 월)	스퀘어R	스퀘어T	
			전시	공연/행사
단위 (일/시간)	1일 (10:00 - 19:00)	1일 (10:00 - 19:00)	1일 (10:00 - 19:00)	4시간
사용료	140,000원	130,000원	210,000원	200,000원
기타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다. 2. 토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3. 행사 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작업 시 1일 사용료의 50%로 한다. 4. 문화예술 외 일반 행사(방송, 촬영 등) 사용료에 100%를 가산한다. 5. 음향장비(4시간) 30,000원, 빔프로젝트(4시간) 20,000원 별도. 6.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 시는 100%를 감면한다. 7. 영등포구예술인총연합회 및 소속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 시는 80%를 감면한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8.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타임스퀘어광장 사용허가신청서(제4조 관련)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시간 분)		
주최자 또는 주최 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장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 4. 안전관리 계획(참여인원 500명 이상 행사 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 시간)		
사 용 장 소		☐ 타임스퀘어광장 ☐ 영등포아트스퀘어 [☐ 스퀘어 A ☐ 스퀘어 R ☐ 스퀘어 T(전시, 공연/행사)]		
주최자 또는 주최 단체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연락 책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 4. 안전관리계획(참여인원 500명 이상 행사 시)				

(뒷면)

서 약 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설사용 허가를 준수하며,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2.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지기로 하며,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위 되는 일 또는 타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권리양도, 전대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사용자는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며 일체의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제외)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모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며 음향의 사용은 허가된 기준 범위에서 하고, 구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광장의 사용 및 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소음 등을 고려하여 07:00~22:00까지로 제한함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